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20259
----------	-------

제안연월일 : 2026. 7.

제안자 : 국회운영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연 번	의안명	대표 발의자	발의일	경 과
①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55호)	진성준의원	2024.6.10.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4.8.27.)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2024.9.9.) 상정 후 소위원회
②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990호)	박홍근의원	2024.6.26.	"
③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7711호)	김남근의원	2026.3.24.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6.7.27.)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소위원회
④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9947호)	송영길의원	2026.7.14.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0 26.7.27.)

가. 제437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2026.7.28.)에
서 위 4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각각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
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나. 제437회국회(임시회) 제3차 국회운영위원회(2026.7.29.)에서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가 마련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안전신속처리제도는 위원회에서 안전이 장기간 계류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2012년 국회법 개정(일명 ‘국회선진화법’)으로 도입되었으나, 신속처리대상안전으로 지정되어도 의결까지 최대 330일 이상이 소요됨에 따라 시급성을 요하는 안전이 적시에 처리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개정안은 신속처리대상안전의 심사기한을 위원회 60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30일,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거나 부의된 날이 지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여 최장 90일로 단축하고, 그 밖에 현행법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신속처리대상안전의 심사기한을 최장 ‘330일 이상’에서 ‘90일 이상’으로 단축함(안 제85조의2제3항·제6항 및 제7항).

나.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친 신속처리대상안전에 본회의 자동상정 절차가 적용됨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함(안 제85조의2제5항 및 제6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의2제3항 본문 중 “180일”을 “60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90일”을 “30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법제사법위원회가 신속처리대상안건”을 “법제사법위원회가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하여 제3항 본문에 따른 기간”으로, “신속처리대상안건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3항 단서에 따른 기간”을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하여는 제3항 단서에 따른 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제7항”을 “제6항”으로 한다.

- ⑥ 신속처리대상안건은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 또는 본회의에 부의된 날이 지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건의 신속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속처리대상안건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5조의2(안건의 신속 처리) ① · ② (생 략) ③ 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심사를 그 지정일부터 <u>180일</u> 이내에 마쳐야 한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그 지정일, 제4항에 따라 회부된 것으로 보는 날 또는 제86조제1항에 따라 회부된 날부터 <u>90일</u> 이내에 마쳐야 한다. ④ (생 략) ⑤ <u>법제사법위원회가 신속처리대상안건(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거나 제4항 본문에 따라 회부된 것으로 보는 신속처리대상안건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3항 단서에 따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u>	제85조의2(안건의 신속 처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60일- -----. ----- ----- ----- ----- -----30일----- . ④ (현행과 같음) ⑤ <u>법제사법위원회가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하여 제3항 본문에 따른 기간</u> ----- ----- -----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하여는 제3항 단서에 따른 기간) ----- ----- -----

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
된 것으로 본다.

⑤ 법제사법위원회가 신속처리
대상안건(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되었거나 제4항 본문에 따라
회부된 것으로 보는 신속처리
대상안건을 포함한다)에 대하
여 제3항 단서에 따른 기간 내
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
된 것으로 본다.

⑥ 제4항 단서 또는 제5항에
따른 신속처리대상안건은 본회
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부
터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
되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신속처리대상
안건이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된다.

-----.

⑤ -----

-----제
3항-----

-----.

⑥ 신속처리대상안건은 본회의
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 또
는 본회의에 부의된 날이 지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
에 상정된다.

<삭 제>

⑧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 원과 합의한 경우에는 신속처 리대상안건에 대하여 제2항부 터 <u>제7항</u>까지의 규정을 적용하 지 아니한다.	⑧ ----- ----- ----- -<u>제6항</u>----- -----.
---	--